

大學圖書館의 專門職 職員에 대한 教授職位 附與 問題에 대하여

助教 姜 鎮 伯 譯

譯者註：이 글은 Robert H. Muller 氏가 1953년에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Bulletin”에 發表한 “Faculty Rank for Library Staff Members in Medium-sized Universities and Colleges”를 번역한 것이다. 이論文을 발표한 당시 筆者는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의 圖書館長으로 在職中이었다.

이 글은 지금으로 부터 꼭 20년 前에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 언급된 美國 大學圖書館과 現在의 우리나라 大學圖書館과의 사이에도 너무나 협격한 격차가 있을 진대 하물며 오늘날의 美國大學圖書館과의 격차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서울大學校圖書館은 서울大學校 10개년計劃의 일환으로 도서관종합화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또한 도서관자체내에서도 도서관발전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譯者は 비록 이 글이 20년 전에 발표된 것이지만, 도서관종합화방안을 마련하는데 다소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번역함에 있어 가능한 한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실정에 맞도록 번역하였으며, 이 글에서는 「司書」 또는 「司書職」이란 用語를 의식적으로 피하였음을 부언해 둔다.

高等教育機關에서 專門的 訓練을 받은 라이브러리언들에게 教授職位 (faculty rank)를 附與해야 하는가 하는 問題는 大學行政家와 教授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언들 사이에서도 論爭의 對象이 되어 왔다. 1953년 4월 美國의 49개 중간규모의 綜合大學 및 單科大學을 망라한 앙케이트調査를 통하여 49개 圖書館 中 42개 圖書館에서 圖書館學科 大學院을 卒業한 사람 全體 혹은 若干名의 幹部級職員이 教授職位를 갖고 있음이 判明되었다. 또한 42개 圖書館 中 28개 圖書館에서 圖書館長(head librarian)級 이외의 職員들



도 教授職位를 갖고 있는데, 이 28개 圖書館 中 19개 圖書館만이 모든 幹部級職員에게 教授職位를 부여하고 있다.

도표-1 專門職 圖書館職員의 教授職位 所有現況

기관명 소유현황	機 關 名		
全職員	Colorado A&M College	Hunter College	St. Louis Univ.
	Univ. of Denver	Iowa State College	So. Illinois Univ.
	Emory Univ.	Univ. of Kentucky	Univ. of Tennessee
	Univ. of Georgia	Montana State College	Univ. of Utah
	Univ. of Houston	Univ. of New Hampshire	Utah State College
	Howard Univ.	Univ. of Oregon	Wellesley College
一部職員		Oregon State College	
	Brown Univ.	Dartmouth College	Purdue Univ.
	Univ. of Buffalo	Univ. of Maryland	So. Methodist Univ.
圖書館長만	Univ. of Colorado	Univ. of Oklahoma	Tufts College
	Univ. of Arizona	Univ. of Maine	Univ. of South
	Brooklyn College	Michigan State College	Carolina
	Univ. of Cincinnati	Univ. of New Mexico	Syracuse Univ.
	Univ. of Kansa	Univ. of Notre Dame	Texas A&M College
없음	Univ. of Louisville	San Francisco State College	Univ. of Vermont
	Catholic U. of America	Univ. of Rochester	West Virginia Univ.
	Univ. of North Dakota	Vassar College	Washington Univ.
		Virginia Poly. Inst.	(St. Louis)

도표-1은 對象機關을 教授職位를 갖고 있는 圖書館 幹部級職員의 比率에 따라 分類한 것이다. 圖書館 幹部級職員이(심지어는 圖書館長까지도) 전혀 教授職位를 갖고 있지 않은 圖書館은 分明히 극소수다.

도표-2는 專門的 訓練을 받은 圖書館 幹部級職員의 教授職位에 대한 圖書館長의 態度를 要約한 것이다. 대다수의 圖書館長(49개 중 30개 기관)이, 圖書館學科 大學院을 卒業한 職員은 모두 教授職位를 가져야 한다는 見解를 披瀝하고 있다. 專門的 訓練을 받은 幹部級職員들이 모두 教授職位를 갖고 있는 圖書館의 責任者인 19명의 圖書館長 中에서 거의 모두가((17명) 그들 職員이 教授職位를 갖는데 대하여 賛成하고 있다. 한편 圖書館 幹部級職員 中 若

도표-2. 專門職의 教授職位所有에 대한 館長의 見解

교수직위 소유 전문직의 비율	도서관장의 찬성여부			
	찬성	반대	무응답	합계
全體 圖書館學專攻者	17	1	1	19인
一部 圖書館學專攻者	2	7	—	9인
단1명의 圖書館學專攻者	7	7	—	14인
無	4	3	—	7인
計	30인	18인	1	49인

干數밖에 教授職位를 갖고 있지 못한 30 개 圖書館 中에서 13 개 圖書館은 모든 幹部級職員이 教授職位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資料를 通하여 다음의 2개항의 假定을 導出해 볼 수가 있다.

- 1) 圖書館學科 大學院出身者들에게 教授職位 附與與否에 대한 圖書館長의 態度는 教授職位가 圖書館職員에게 附與되고 있는 機關의 比率에 대해 影響을 미칠지도 모른다.
- 2) 圖書館長들이 그들의 機關에서 圖書館學科 大學院卒業生들에게 教授職位를 주어 採用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現狀維持에 滿足하는 傾向이 있는 것 같다.

이들 두 假定을 基礎로하여 우리는 다음의 4개 項目的豫想을 할 수가 있겠다.

- 1) 現在 모든 圖書館 幹部級職員에게 教授職位를 주고 있는 機關들은 그들 機關들의 圖書館長들이 이러한 政策을 支援하리라는 點을 비추어 볼 때 繼續 이와같은 政策을 밀고 나갈 것이다.
- 2) 現在 모든 幹部級職員에게 教授職位를 附與하지 않고 있는 비교적 極少數의 機關들은 이들 機關의 圖書館長들이 教授職位를 附與하지 않는 政策에 대하여 반대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모든 幹部級職員들에게 教授職位를 附與할 것 같다.
- 3) 現在 圖書館長에게만 教授職位를 附與하고 있는 몇몇 機關들은 비록 모든 職員들에게 까지는 아닐지라도 幹部級職員들에게 이러한 特權을 擴大

시킬 것이다.

4) 圖書館長에게 까지도 教授職位를 附與하고 있지 않은 極少數의 機關들은 점점 그 수가 減少될 것이다.

여하튼 모든 圖書館學科 大學院卒業生에게 教授職位를 附與하는 問題에 대하여 圖書館人們도 意見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本調查資料가 명시하고 있다. 大規模의 大學圖書館을 망라하여 教授職位問題에 대한 圖書館長의 態度에 대한 그 前의 調查에서도 비록 極少數의 圖書館長만이 (53명 중에서 7명) 圖書館 幹部級職員의 教授職位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거나 이를 옹호하지 않았지만 역시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것이다.¹⁾

우리는 質問書에 대한 應答을 통하여 몇 가지의 時事的 留保條件을 얻게 되었다. 즉 어떤 圖書館長은, 教授身分은 附與되어야 하지만 教授職位의 附與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다른 사람은, 課長級에게는 教授職位가 附與되어야 하지만 一般 모든 專門職員에게는 教授職位를 附與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또 어떤 應答者는 男女共學의 大學에서는 라이브러리언의 教授職位를 認定하고 男子大學에서는 認定치 않았다. 또 다른 應答者는 熟練된 라이브러리언에게만 教授職位를 認定하고 初心者에게는 認定치 않았다.

教授職位問題에 대해 이와같이 多樣한 반응을 보인 것은 應答者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다른 면을 강조한 까닭인 것 같다. 즉 어떤 사람은 그것을 勤務年限, 休暇, 教授委員會加入權, 教授會에의 참여, 아카데믹 프로세션 (academic processions) 그리고 투표권 문제의 각도에서 다루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주로 傱給에 있어서의 동등한 待遇의 각도에서 다룬 것이다. 많은 機關에서 圖書館學科 大學院卒業生에 대한 教授職位 附與問題를 待遇面에 있어서의 同等化로 해석하는 한 이를 하나의 환상으로 밖에 認定하지 않았다. 어떤 한 기관에서는 비록 모든 圖書館 幹部級職員이 教授職位를 갖고

1) Lundy, Frank A. "Faculty Rank for Professional Librarians—Part II."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12. p. 109-122 (1951. 4)

지지만 教授의 債給보다 약 25%가 낮은 것으로 記錄되고 있다.

理論的 根據(Justification)

圖書館 幹部級職員에 대한 教授職位 附與問題는 분명히 두개의 다른 관점 즉 “勞動組合(trade union)”과 “專門的 奉仕(professional service)”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1) 라이브러리언들은 教授職位를 주로 어떤 바람직한 恩典, 特權 그리고 특히 동등한 봉급의 確保手段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

2) 教授職位는 적절한 자격이 있는 라이브러리언이 大學社會에서 보다 더 效果的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教授職位를 갖게 되면 동료의 위치에서 教授들과 意思疏通을 하고 協力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관점은 응답 중 다음의 引用文에 잘 함축되어 있다.

“라이브러리언들은 그들의 資格과 能力이 教授 또는 研究教授와 同等하므로 그들에게 教授職位가 附與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專門職 라이브러리언의 範疇속에 포함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教授職位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치는 않는다.” 또 다른 應答者도 대개 동일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圖書館 專門職員은 大學社會에서 專門的 能力과 資格이 있는 사람으로서 認定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또한 인정을 받는 캠퍼스내의 엘리트이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核心的 專門家구룹인 教授들이 받는 어떠한 형태의 特權을 그들 역시 당연히 향유하여야 한다” 단일 圖書館職員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教育的 課題(educational assignments)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職位와 職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教授身分을 획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단 그들의 學問的 姿勢와 素養 및 研究에서 실제로 성취한 業績이나 혹은 잠재적인 업적을 근거로 하여 資格이 附與되는 것이라면 “專門的 奉仕”라는 관점이 “勞動組合”이라는 관점 보다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고 아마도 결국은 더 많은 持續的인 이익을 산출할 것이다. “專門的 奉仕”라는 관점은 다음의 설명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大學의 圖書館職員에게 다른 教職員(instructional personnel)과 同等한 身

分을 부여한다면 대학의 일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욱 效果的으로 참여할 것이며 또한 大學의 目標와 目的達成에 고도로 기여하리라 예상된다.”²⁾

職位의 分布

49개 圖書館에서 단순히 “課長(department heads)”이라고 지칭되는 사람

도표-3: 5명 이상의 도서관직원이 교수직위를 갖고 있는 23개

기관에서의 직급분포

기 관 명	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Univ. of Oregon	29	17	8	3	1
Univ. of Kentucky	27	18	8	0	1
Univ. of Denver	26	16	7	2	1
Oregon State College	26	14	8	3	1
Univ. of Georgia	26	15	9	1	1
Purdue Univ.	20	14	3	2	1
Iowa State College	19	11	5	1	2
Univ. of Tennessee	16	7	4	3	2
St. Louis Univ.	15	14	0	1	0
Howard Univ.	15	15	0	0	0
Univ. of Utah	13	7	4	1	1
Univ. of Colorado	12	5	6	0	1
So. Illinois Univ.	13	8	4	0	1
Emory Univ.	12	7	2	2	1
Univ. of Houston	11	3	5	2	1
Univ. of New Hampshire	11	5	2	3	1
Utah State College	10	5	4	0	1
Dartmouth College	9	4	2	0	3
Montana State College	9	3	4	1	1
Colorado A&M College	8	3	2	1	2
Univ. of Maryland	8	6	0	1	1
Hunter College	5	3	1	1	0
Univ. of Buffalo	5	0	4	0	1
계	345명	200명	92명	28명	25명

2) Gelfand, Morris A., “The College Librarian in the Academic Communit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10. p. 139 (1949. 4)

을 제외한 총 369명의 圖書館 幹部級職員이 教授職位와 職名을 갖고 있다. 만일 우리가 5명 또는 그 이상의 圖書館 幹部級職員들이 教授職位와 職名을 갖고 있는 圖書館에 대해서만 관찰한다면 검토해야 될 圖書館의 숫자는 23개로 감소된다(도표-3참조). 이 23개 圖書館에는 345명의 圖書館 幹部級職員이 教授職位와 職名을 갖고 있다.

도표-4는 圖書館 幹部級職員의 職位의 分布를 요약한 것이다.

도표-4: 23개 도서관에서의 교수직위 분포도

도서관직원의 교수직위	인원	비율	도서관원 당 평균
전임강사	200	58	9
조교수	92	27	4
부교수	28	8	1
정교수	25	7	1
계	345명	100%	15명

도표-4는 圖書館 幹部級職員의 85%가 專任講師와 助教授등 2개의 낮은 職位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上位職位는 일반적으로 館長(head librarian)과 副館長(associate librarian)의 지위에 할당되어 있다. 3개 圖書館에서 在任者が 博士學位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圖書館長이 正教授(full professor)의 職位를 갖지 못하고 있다.

一般學科에 대해서는 교수들에게 4개의 職位를 공평히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圖書館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지 못하다. 圖書館 幹部級職員사이의 직위의 균등한 분포가 바람직하든 않든 간에 이는 中間管理層의 權位를 포함하는 圖書館組織의 전형적 階序制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一般學科에서는 모든 教職員은 行政的으로 學科長에게 복명하게 되어 있다.

教授職位와 職名을 갖고 있는 369명의 圖書館 幹部級職員중에 167명이 助教授나 그 이상의 職位를 갖고 있으며 70명이 副教授나 그 이상의 職位를 갖고 있다. 그러나 단지 19명의 圖書館 幹部級職員만이 博士學位를 획득하였다. 이와같이 博士學位를 가진 고위 圖書館職員의 비율이 비교적 낮다는

사실은 學問的 業績보다는 다른 요소가 教授職位를 갖고 있는 圖書館職員의 승진에 고려되었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高位 圖書館職員 中 博士學位 所持者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博士學位 所持者로서 圖書館教育을 받은 候補者의 숫자가 大學圖書館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轉換期에 접어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博士學位를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언은 어떠한 사람도 副教授以下의 職位를 갖은 사람은 없고 博士學位 所持者 19명 중 16명이 正教授 職位를 갖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副教授나 正教授의 職位를 갖고 있으으면서 博士學位가 없는 51명 중 몇명은 博士課程을 밟고 있으며 약간명은 가까운 시일내에 學位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했다. 大學圖書館職員 중 博士學位 所持者의 증가가 圖書館職員 사이에 있어 職位의 보다 더 균등한 분포를 산출할 것인가는 深思熟考할 문제인 것이다.

教授職과 圖書館俸給

라이브러리언들에 대한 教授職位 附與는 바람직 하긴 하지만, 그것이 資格과任務의 重要性에 어울리지 않는 불충분한 債給과 身分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톰프슨(Thompson)은 말하였다. 그러나 專門職 圖書館職員에 대한 教授職位의 부여를 唱道하고 확보한 몇몇 圖書館長들은 教授身分으로의 변동이 處遇改善을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은연중에 했을런지도 모른다.

教授身分에 대한 圖書館俸給의 관계는, 첫째로 라이브러리언이 教授身分을 갖지 않은 機關과 教授身分을 갖고 있는 機關의 圖書館俸給의 비교에 의해서, 둘째로 圖書館職員에게 教授身分을 부여하기 前과 教授身分으로 변동된 후의 債給을 비교함으로써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스터디는 前에는 결코 發表된 일이 없으며 지금까지의 스터디는 라이브러리언의 各種 教授身分에 대해서 特別한 고려없이一般的으로 教授俸給에 대한 圖書館俸給의 관계에만 국한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터디를 통하여 圖書館長級을 제외한 圖書館職員의 債給이 教授보다 낮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예를 들면 南部大學에서는 圖書館職員은 100케이스 중 55케이스는 教授들과

同一한 奉給明細를 갖고 있지만 몇몇 케이스에서 圖書館職員의 奉給이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고 있음을 스페인(Spain)이 그의 論文, “南部大學에서의 라이브러리언의 教授身分”에서 밝혔다. 또한 50개 東部大學 구룹에서도 역시 圖書館職員의 奉給이 教授의 奉給보다 낮다는 것을 젤힌드(Gelfand)가 그의 論文, “大學社會에서의 圖書館職員”에서 밝혔다. 1947년 40개 州立大學과 聯邦政府의 원조를 받는 大學에 관해서 릴(Lyle)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 냈다——大部分의 幹部級職員이 속해있는 課長級이나 專門職 係長級의 地位에 있는 12개월 베이스의 라이브러리언이 9개월 베이스의 教授보다 적은 奉給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릴(Lyle)의 調査는 1950년 美國 大學教授協會 켄터키大學支部 特別委員會가 실시한 調査와 本質的으로 일치한다. 上記委員會의 調査에 의하면, 15기관 중 1개 기관에서 만이 副教授, 助教授, 專任講師에 相應하는 職位에 대한 圖書館奉給이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케이스일지라도 9개월 베이스의 教授職에 반하여 12개월 베이스의 特別手當을 포함해야 비로소 圖書館職員奉給이 더 高額인 것이다.

우리의 앙케이트조사에서도 專任講師, 助教授의 奉給은 물론 課長 및 係長級에 있는 圖書館 專門職의 最少 및 最多 奉給額에 대한 자료를 얻었다. 中間值의 奉給額에 대하여 檢討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信憑性 있는 비교를 하기에 충분한 數의 기관으로부터 中間值 奉給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치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最多 및 最少 奉給額의 平均值를比較하였다. 비록 平均值가一般的 경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圖書館 奉給의 平均值와 이에 相應하는 教授職 奉給의 平均值를 비교하는 것은 수긍할 만하다고 하겠다. 奉給水準의 다른 指數의 비교가 實質的으로 유사한 관계를 나타내는 정도까지는, 비교란 차이를 檢討하는 目的으로서는有效한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但書를 염두에 두고서 奉給水準의 比較에 적용할 수 있는 調査結果를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하자.

다음에 言及된 教授職의 奉給은 1學年度 즉 약 1개월간의 휴가를 포함한 약 9개월 동안에 支給된 奉給이고, 이와는 달리 圖書館職員에 대한 奉給은

一年間의 奉給 즉 1개월간의 휴가를 포함한 12개월에 대한 奉給이다.

도표-5: 圖書館職員과 教職員俸給의 平均值, 1952—53

職別	教職員(9個月分)		圖書館職員(12個月分)	
	專任講師(32名)	助教授(31名)	係長級(46名)	課長級(44名)
最少額	\$ 2,400.00	\$ 3,400.00	\$ 2,550.00	\$ 3,180.00
中間額	3,675.00	4,650.00	3,400.00	4,063.00
最多額	5,300.00	6,129.00	4,525.00	5,404.00

도표-5는 專任講師의 平均值의 中間 및 最多 奉給額이 圖書館係長級의 그 것보다 더 높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다. 또한 圖書館課長級의 平均值의 最少, 中間, 最多 奉給額이 助教授의 그것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資料에 의하면 12개월 동안에 圖書館係長級에 支給되는 奉給額이一般的으로 9개월 동안에 專任講師에게 支給되는 奉給額보다 더 낮지만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圖書館 課長級들은一般的으로 同一機關내의 助教授와 비교하면 훨씬 不利한 待遇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하기 위하여 調查對象機關을 각각 教授職級과 圖書館職級에 따라 두 구룹으로 나누었다. 예를 들면 最少俸給額의 比較에 있어서 圖書館係長級이 專任講師보다 더 낮은 奉給을 받는 機關의 구룹과 더 높은 奉給을 받는 機關의 구룹이 있는 것이다(도표-6 참조). 그러나 모든 케이스에서 다같이 앞에서와 같이 12개월간에 圖書館職員이 받는 奉給에 대하여 9개월간에 教授가 받는 奉給을 比較한 것이다.

도표-6: 圖書館俸給과 教授職俸給의 比較, 1952—53

비교대상	기관수	도서관봉급이 교수직봉급보다		
		더 낮은 기관	더 높은 기관	계
도서관계장급 對 전임강사	22	9	31	
도서관과장급 對 조교수	23	5	28	

※ 단 도서관봉급 12개월분 對 교수직봉급 9개월분을 비교한 것임

22개 機關에서 圖書館係長級이 專任講師보다 小額의 奉給을 받고 9개 機關에서는 高額의 奉給을 받고 있지만, 그 차이는 심하지 않다. 23개 機關에서

圖書館課長級이 助教授보다 少額의 奉給을 받고, 단지 5개 機關에서만 高額의 奉給을 받고 있다. 그러나 圖書館課長級이 高額의 奉給을 받는 機關은 助教授의 奉給이 比較的 낮은 機關이며 助教授와 圖書館課長級의 奉給額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이를 요약한다면 圖書館職員보다 教職者의 奉給이 더 高額인 機關이 低額인 機關보다 一般的으로 多數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專門職 圖書館係長級을 專任講師에 비교할 만 하고 圖書館課長級을 助教授와 비교할 만 하다고 假定한다면, 12개월간의 圖書館奉給이, 비교할만한 職位에 있는 教授職의 9개월간의 奉給보다 一般的으로 더 낮은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인 待遇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研究할 가치가 있는 課題인 것이다.

大部分의 機關에서 專任講師에게 요구되는 學問的 배경은 아마도 專門職라이브리리언의 그것과 大同小異한 것이다. 즉 最少한 하나의 碩士學位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 물론 教授職이나 專門職라이브리리언은 다같이 本質的으로 教育的인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教授職位가 教室에서 직접 學生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附與되는 獨占物이라 할지라도 研究經歷에 따라서 同等한 待遇를 해줘야 한다는 요구에는 하등의 非合理性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待遇의 同等化가 일단 달성되면 大學圖書館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수의 有能한 人才의 誘引問題는 지금보다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待遇의 同等化를 圖書館行政家들이 그들 職員中 圖書館學專攻者들의 業務를 엄격하게 언제나 專門的인 일에만 제한시키는 機關만이 達成되는 것 같다. 이러한 專門的인 業務란 주로 學究의이며, 教育의 동시에 管理의in 업무이며, 지금까지 一般大衆이 圖書館人의 業務라고 잘못 認識하여 왔던, 書記的 및 서고직이와 같은 日常業務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高度의 專門的인 知識을 要하는 業務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까닭에 잘 組織된 圖書館은 실제로 專門職과 非專門職을 分離시키고 있는 것이다.